

1. 개정 이유

감염병에 관하여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21255호, 2025. 12. 30. 공포, 2026. 07. 0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정비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안 제1조의2 신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나.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2호)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여권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보완(안 제8조)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

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외 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상황평가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및 질병관리청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이하 ‘국장급 공무원 등’이라 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등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상황평가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황평가회의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황평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질병관리청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권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상황평가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및 질병관리청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이하 ‘국장급 공무원 등’이라 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등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u> <u>② 상황평가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장은 상황평가회의를 대</u>

	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u>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⑤ <u>상황평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u>
	⑥ <u>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u>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정보를 말한다.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 수록 정보	2. 「여권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37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의안 소관 부서명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9211